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30
----------	------

발의연월일 : 2025. 3. 25.

발의자 : 윤준병 · 신영대 · 박민규  
문대림 · 박홍배 · 조계원  
정동영 · 김한규 · 민병덕  
박지원 · 김태년 · 김태선  
장철민 · 허종식 · 송옥주  
서영교 의원(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